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 [redacted]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귀하
(경유)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20-51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1. 귀하가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0. 4. 8. 붙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결정서 1부. 끝.

접수 No. 2020. 04. 24 법무법인 길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전혜빈	사무관	이혜윤	심사과장	김효신	상임위원	이경희
위원장	2020.4.21. 서유미						
협조자							

시행 심사과-609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어진동) / http://www.ace.go.kr

전화번호 044-203-7424 팩스번호 044-868-8125 / beenie19@korea.kr / 비공개(6)

결 정 서

사 건 : 2020-51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redacted]

소속 [redacted]대학교 직위 조교수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강민정

피청구인 : 학교법인[redacted]

[redacted]

심 사 일 : 2020. 4. 8.(서면)

결 정 일 : 2020. 4. 8.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1. 17.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17. 9. 1. [redacted]대학교 호텔관광항공조리학부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17. 9. 1.~2019. 8. 31.).

나.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9. 피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redacte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6. 19.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

라. 피청구인 이사회는 2019. 7. 5. 청구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을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8. 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바. [redacte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27. 청구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취소를 심의하였다.

사. 피청구인 이사회는 2019. 12. 30. 청구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취소를 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귀하는 [redacted]대학교 호텔관광항공조리학부 조교수로서 조건부 재임용 결정에 따라 연구실적을 2019. 12. 16.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연구 실적을 기한 내 미제출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향후 신분관계 종료절차>

- 2019학년도 2학기 담당과목 수업처리 마감일부로 교원으로서의 신분 종료

3.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받은 후 2개월가량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9. 7. 16. 청구인을 조건부로 재임용한다는 인사통지서를 보내왔다. 인사통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은 논문 실적에 관한 기준 점수나 업적평가 기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미대학교 담당자에게 조건부 재임

용이 된 것에 대하여 부족한 점수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으나, 논문 실적만 쌓으라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통보는 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논문 1편을 준비하였고, 2019. 12. 4. 글로벌영어교육학회에 '대학생의 TOEIC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한 듣기전략 지도의 효과'라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어 학회로부터 논문 형식 및 초록 수정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논문이 2019. 12. 31. 글로벌영어교육학회지에 게재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9. 12. 28. 기한 내 논문이 제출되지 않아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해당 이메일에는 기한 도래 전 논문 제출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다. 조건부 재임용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교원이 그 조건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 처분과 같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건부 재임용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하여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최초 임용 기간은 2017. 9. 1.~2019. 8. 31.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건부 재임용 기간도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019. 9. 1.~2020. 2. 29.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임용기간 2개월 전인 2019. 12. 31.까지의 논문 실적이 청구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시기에 교원에게 다시 실적 제출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실적 미제출 사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 8.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 27., 2016. 2. 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 1. 27., 2016. 2. 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 27., 2016. 2. 3.>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 1. 27., 2017. 11. 28.>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5. 1. 27., 2008. 3. 14., 2016. 2. 3., 2017. 11. 28.>

■ [redacted]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인사규정」

제7조(당연퇴직) 비정년트랙 교원은 제5조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날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재계약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년트랙 재임용심사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redacted]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재임용대상 결격사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은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실적 최소 인정률 100% 미만인 교원

2. 강의실적, 학생지도실적, 봉사 및 기타활동실적의 각 영역별 배점의 50% 미만 점수를 취득한 교원

3.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교원 중 강의실적, 학생지도실적, 연구실적, 봉사 및 기타 활동실적 총점 150점 중 취득총점이 90점 미만인 교원

제9조(재임용심사 탈락 예외) 제8조에 의하여 재임용심사 탈락자라도 대학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탈락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족 시 재계약할 수 있다.

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여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여부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에 관한 평가결과와 각 평가항목의 평점 및 평정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교원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22129 판결 참조).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과 같은 법 제7항은 학교법인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재임용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재임용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과 그 자료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재임용 심의 시 적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에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교원이 재임용 당시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구체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적어도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해당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 4. 11. 선고2010구합46012 판결 참조).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면서 2019. 12. 27. [redacte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2019. 12. 30. 피청구인 이사

회 의결을 거쳤음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8.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원장 직무대리 오석환

위 원 길인옥

위 원 김이경

위 원 손종학

위 원 오행자

위 원 이종근

위 원 정현미

위 원 한범수

위 정본임.

2020. 4.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